

3. 社會間接資本 民資誘致 促進法 施行令(案)의 問題點

- 內容 : 民資誘致 事業에 대해 總事業費의 10%를 利潤으로 認定하나 借入金 利子는 總事業費에서 除外.
- 問題點 : 總事業費에 借入金利子를 除外하고 30大그룹의 主力企業을 除外함으로써 國內參與企業의 競爭力 弱化.

-民資誘致 促進法의 通過 背景

- 社會間接資本(SOC) 시설부족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가가 원가상승,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良質의 公共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해 민자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됨.
- 정부의 SOC 투자를 위한 財源不足.

-內容

- 民資誘致促進法이 오는 11월 3일부터 발효.
- 總事業費에는 調查費, 設計費, 純工事費, 附帶費, 運營施設費, 諸稅公課金, 營業準備金 등을 포함하며, 총사업비의 10%를 이윤으로 인정하나 借入金 利子는 除外.
- 또 총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인 대형 사업이나, 부대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인 사업 등은 정부의 關係部處와 民間代表 등으로 구성되는 民資誘致 事業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.

-問題點

總事業費에 借入金利子 除外

- 現實的으로 借入에 의존해 투자할 수밖에 없는 國內參與企業에 대해 總事業費에 借入金利子를 包含시켜야 資金이 풍부한 外國參與企業과 競爭할 수 있음.

參與企業의 制限

- 國內에서 相對的으로 技術力이 우수한 30大그룹의 主力企業을 參與對象企業에서 除外함으로써 우수한 技術力を 가진 外國參與企業과의 競爭력 弱化.

民資事業에 대한 審議對象事業 選定基準 曖昧

- 申請段階에서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인 사업은 委員會의 審議를 받아야 함.
- 1천억, 2천억원의 基準이 정해진 根據가 모호하며, 더구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事業費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.

-對處方案

- 外國企業과의 合作을 통한 資金調達 및 外國 先進 技術의 確保를 통한 競爭力 向上에 努力해야 함.

(천 일 영)